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20450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절차 이행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204508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1125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 선고 2018. 1. 11.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11259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전부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0.(또는 2013. 9. 1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원고의 아들 또는 배우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3쪽 6행의 "2014. 5. 21."을 "2013. 12. 13."로, 3쪽 7행의 "(2014드단31274호)"를 "(2013드합11379호, 그 후 같은 법원 2014드단31274호로 재배당됨)"으로, 4쪽 16행, 5쪽 3행, 5쪽 7행, 5쪽 11행 및 11쪽 1행의 각 "합의"를 각 "약정"으로, 10쪽 19행의 "상속재산 분배 합의"를 "약정"으로 각 고쳐 쓰고, 3쪽 1행의 "각서" 다음에 "(이하 '2013. 9. 7.자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라 한다)"를, 3쪽 3행의 "확인서" 다음에 "(이하 '2013. 9. 11.자 확인서'라 한다)"를, 3쪽 18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8, 28호증의 각 기재"를, 4쪽 6행의 "2013. 9. 20." 다음에 "위 약정을 구체화하여"를 각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2013. 9. 20. 상속재산 분배 합의가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1) 원고는, 2013. 9. 20.자 재산 배분에 관한 각서는 원고가 2013. 9. 7.자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 및 2013. 9. 11.자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상속재산 배분권한을 행사하여 위 권리를 구체화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9. 7.자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 및 2013. 9. 11.자 확인서는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망인의 양자로서 정당한 상속인으로 원만히 인정받기 위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원고 측에 양도하는 협의에 응하겠다는 취지, 즉 별도의 상속재산 분배 협의를 하기 위한 절차를 합의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원고에게 일방적인 상속재산 배분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2013. 9. 20.자 재산 배분에 관한 각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피고가 2013. 9. 20. 이후 원고 측과의 연락을 단절하였을 뿐 그 외 명시적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를 거절하는 등 증여 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적이 없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에 있어서 묵시적 해제의 의사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에서 피고가 단순히 원고 측과의 연락을 단절한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증여의사를 해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서 진행 중이던 2016. 11.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2013. 9. 20.자 재산 배분에 관한 각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위 각서에 서명·날인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다투어 왔던 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을 조정해 회부하였으나 조정기일인 2016. 7. 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이에 상임조정위원은 2016. 7. 2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 점, 나아가 피고는 2017. 11. 22.자 준비서면에서 '설령 2013. 9. 20.에 피고와 원고 사이에 증여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의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을 그 간의 행동이나 준비서면을 통하여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해제하였으며, 본 준비서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2013. 9. 20. 원고와의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2013. 9. 20.자 재산 배분에 관한 각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증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3. 9. 20. 이후 위 증여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13. 9. 7.자 및 2013. 9. 11.자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설령 2013. 9. 7.자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 및 2013. 9. 11.자 확인서 상의 약정내용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각서 및 확인서 작성 이후 피고의 단순한 변심을 들어 재산 일부를 분배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니 위 각서와 확인서의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합의를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믿고 위 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원고의 위 각 약정상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9. 7.자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 및 2013. 9. 11.자 확인서의 해석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만한 의견 교환'을 전제로 원고에게 상속재산 분배권한 등 위 각서 및 확인서에서 약정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14, 16 내지 24,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의 양자로서 정당한 상속인으로 원만히 인정받기 위하여 위 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고가 망인의 양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운하고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3. 9. 20.에도 위 감정을 토로하기 위하여 피고를 원고의 집으로 부른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측으로부터 2013. 9. 20.자 재산 배분에 관한 각서를 제시받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각서에 서명·날인한다거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하여 확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 측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연락을 단절하였고, 이에 원고 측은 위와 같은 피고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2013. 12. 13. 입양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입양의 효력 및 피고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다투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단순한 변심 때문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서 및 확인서에 따른 상속재산 분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만한 의견 교환이 없어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배분권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권한이 침해될 여지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여미숙

판사김재형

판사위광하

별지